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1가단514183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운

피고1. A

2. 주식회사 B

3. C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경

변론 종결2022. 9. 20.

판결 선고2022. 11. 8.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6,606,227원 및 그 중 86,285,427원에 대하여 2021. 3. 5.부터 2021. 7. 5.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A에 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가. 1) A1)와 피고 C 사이에 별지1 기재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는 A에게 별지1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나. 1)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2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2020. 4. 22.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A에게 별지2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20. 4. 23. 접수 D로 마쳐진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2. 5. 17.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최종 변경된 보증조건은 다음과 같다.

E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85,000,000원	2021. 5. 14.
---	--------	----------	-------------	--------------

2) A가 2020. 12. 2.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사실이 같은 날 원고에게 통지됨으로써 A 관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고가 2021. 3. 4. 중소기업은행에 위 보증 관련 채무원리금 합계 86,450,767원(= 원금 85,000,000원 + 이자 1,450,767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A에 대하여 86,285,427원(= 대위변제금 86,450,767원 - 보증료환급액 165,34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 A의 처분행위

1) 피고 C는 2019년경 'A로부터 별지1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수하되, A에게 대금 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2019. 11. 27. A에게 주식양수도대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A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절차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20. 4. 22.경 A로부터 별지2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무상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21. 3. 4.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게 되었고, 위 구상금 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보증약정이 이미 2012. 5. 17. 체결되었음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다. 그러나 앞서 기초사실의 인정 근거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피고 C와 A 사이의 양수도계약은 2019. 11. 27.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피고 회사와 A 사이의 양도계약은 2020. 4. 22.경 체결되었는데, A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은 위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는 15개월여, 위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는 10개월여 뒤인 2021. 3. 4.인 점, ② 위 각 계약은 피고 C가 A로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C가 A 개인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현재로서는 피고 C와 A가 그 외관과는 전혀 다른 실질 관계를 맺고 있다고 추측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각 계약의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이 법원의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을 보면, A의 채무 연체는 대부분 보증사고와 인접한 시점에 이르러 발생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회사와 피고 C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건우

별지

1) 원고는 A를 상대로는 구상금 지급을, 주식회사 B, C를 상대로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A의 피고 지위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유 기재에서도 같다.